



미동남부 한인회 연합회

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, S.E. U.S.A.

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회칙

(2025 년 9 월 13 일 개정)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: 본회의 명칭은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(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, S.E.U.S.A.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: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미동남부 지역 동포들의 보다 큰 단결과 친목을 통하여 미국 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, 우리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, 한미 양국간의 문화교류와 우호증진, 각 지역한인회와 한인들의 상부상조를 도모한다.

제 3 조 (구성): 본회는 미 동남부 각 지역 한인회로 구성한다.

제 4 조 (본부와 연락소): 본회의 본부는 애틀랜타 지역에 둔다. 필요에 따라서 현직 회장의 지역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.

제 2 장 회원

제 5 조 (구성): 본회는 정회원, 일반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
1) 정회원: 본회가 규정한 의무를 필하고 회비를 납부한 미 동남부 지역 한인회의 전, 현직회장으로, 본회의 가입에 동의한 개인으로 한다.

2) 일반회원: 자문위원 및 각 지역 한인회의 임원으로, 본회의 가입에 동의한 개인으로 한다.

3) 명예회원: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가입에 동의한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.

제 6 조 (권리): 정회원은 임시총회 요구권, 회장 입후보자 추천권,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은 행사, 회의 참여와 의견교환 및 자문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 7 조 (의무): 모든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칙 및 내규를 준수해야 한다. 정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매년 1 회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.

제 3 장 임원

제 8 조 (회장 선출 및 회장단 구성): 본회는 회장 1 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. 선출된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포함해 10 인을 초과하지 않는 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 인으로 회장단을 구성한다.

제 9 조 (회장): 본회를 대표하여 회칙이 부여한 권한과 총회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.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 및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10 조 (부회장):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최연장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1 조 (사무국, 부서 및 법률고문):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회장의 명에 따라 사무 및 총무를 관장하고, 예산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금전출납을 관장한다. 사무총장은 산하 임원 활동을 관장하며 공문서를 전결한다. 회장은 필요에 따라 회장특별보좌관 (회장특보), 사무차장, 또는 사무국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 또한, 필요에 따라, 회장은 (1) 총무부; (2) 재정부; (3) 조직부; (4) 섭외부; (5) 체육부; (6) 문화부; (7) 교육부; (8) 홍보부; (9) 대외협력부 등을 비롯, 실무 진행을 위한 각종 부서를 설치하고, 해당 부서의 운영을 담당할 부장 및 차장을 임명할 수 있다. 회장은 미 동남부 지역 내 한 곳 이상의 주 대법원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부여 받고, 변호사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상태에 있지 않은 법률가 1 인 이상을 본회의 법률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운영위원회):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할 수 있다.

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경우, 본회의 회장이 의장이 되며, 각 지역 한인회 현직 회장과 본회의 회장단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 본회의 회장단을 제외한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지역한인회의 임기를 따른다.

제 13 조 (임기): 회장의 임기는 만 2 년으로 하며, 본회가 정한 선출절차에 따라 중임할 수 있다.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사무차장, 고문, 자문위원, 운영위원, 사무국 간사, 부장, 및 차장 등 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제 14 조 (자문위원): 회장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 15 조 (고문 및 명예회장): 본회의 고문단은 역대 회장으로 구성된다. 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직전회장으로 회장이 추대한다.

제 4 장 총회

제 16 조 (정기총회):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, 본회의 제반 사항 및 기능을 주관하며, 매년 9 월 30 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.

제 17 조 (의결): 총회는 참석인원을 의사 정족수로 하고, 모든 의결은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 단, 회칙개정은 참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8 조 (기능): 1) 회장선출 2) 회칙개정 3) 이사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 인준 4) 결산 및 사업보고 5)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심의 6) 기타사항.

제 19 조 (장소): 총회는 애틀랜타에서 한다.

제 20 조 (임시총회)

1) 임시총회는 소집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, 회장이 소집한다.

2)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이사는 안건을 명시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를 공증 서명한 후 이사장을 통해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할 수 있다.

- 3) 정회원 30 명 이상이 안건을 명시해 임시총회를 요구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- 4) 제 20 조 2, 3 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경우,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사회

제 21 조 (이사회): 이사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.

- 1) 총회의 위임사항에 관한 건
- 2) 예산 및 사업계획과 결산 및 사업보고에 관한 변경의 건
- 3) 감사의 선출 및 보선의 건
- 4) 제반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심의의 건
- 5) 회비 책정 및 심의의 건
- 6) 상벌에 관한 심의 및 추천에 관한 건
- 7)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 22 조 (이사회 구성 및 직제)

- 1) 구성: 이사회는 30 명 이내로 구성되며 현 지역한인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- 2) 직제: 이사회는 업무를 수행하 위해 이사장 1 명, 수석부이사장 1 명, 부이사장 2 명, 간사 1 명을 둔다.
- 3) 의결: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3 조 (이사장단): 이사장은 회장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통해 선출되며, 수석 부이사장, 부이사장과 간사는 이사장이 회장의 동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.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이사회를 총괄한다.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, 이사장 유고시 수석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간사는 회의 준비 업무, 회의록 작성, 이사회 관련 서류정리 및 이사장을 보좌한다.

제 24 조 (이사회 소집):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이사 1/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, 이사장이 소집한다.

제 25 조 (감사): 본회의 감사는 2 명으로 하고,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6 개월
마다 실시한다. 감사는 총회에 보고되는 재무보고서를 검토, 확인 및 서명해야 한다.

제 6 장 선 거

제 26 조 (선거관리위원회 구성)

- 1) 시기: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는 선거일로부터 45 일 이전에 구성한다.
- 2) 구성: 선관위는 위원장 1 인, 위원 4 인으로 한다.
- 3)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.

제 27 조 (선거관리위원회 기능)

- 1) 회칙 및 세칙에 따라 선거절차 집행
- 2)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및 입후보등록비 접수 관리
- 3) 투/개표 장소 설치 운영 및 관리
- 4) 선거 결과 보고 및 당선 선포
- 5) 기타 선관위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

제 28 조 (입후보자의 자격): 입후보자의 자격은 만 35 세 이상의 본회 정회원으로,
회칙에 정해진 정회원의 의무를 선거일 45 일 전까지 충족한 자로 한다. 단 전직
지역회장인 경우 지역 한인회가 규정한 회장직 임기를 만기 종료한 자로 입후보자는
2 회(4 년)이상 회비를 납부했어야 한다

제 29 조 (선거권): 정회원이 선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비 납부의 의무를 선거일
45 일 전까지 이행하여야 하며, 사무총장은 등록이 마감된 정회원 명단을
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 30 조 (입후보자의 등록비): 회장 입후보자의 등록비는 최소 \$20,000.00 / 최대
\$30,000.00 의 범위 내에서 선관위가 결정하며, 입후보자의 등록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
선관위는 경비지출 상세내역 발표 및 결산 공고를 거쳐 2 주 내에 차기
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에 전달해야 한다.

제 31 조 (후보자 등록)

1)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, 경력 증명서, 20 인 이상의 정회원 추천서 등 선관위가 규정한 소정의 서류를 등록비(은행 발행 수표)와 함께 선거일 20 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.

2) 선관위는 등록된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와 등록비를 검토한 후, 입후보자에게 3 일 이내에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3) 입후보자가 제출한 등록 서류와 등록비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, 선관위의 검토 결과, 등록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될 경우, 3 일 이내에 서류 보완 또는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4) 입후보자가 선관위의 서류 보완 또는 해명 요구를 3 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,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5) 단. 31 조 4 항에 의거하여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반액(1/2)만 환불 조치한다.

제 32 조 (투표방법): 본회의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, 단독 입후보의 경우에는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33 조 (참관인): 회장 입후보자는 경선일 경우 선거일 5 일 전 까지 참관인 1 명의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4 조 (당선 무효): 입후보자가 당선 또는 입후보를 목적으로 회원의 회비 대납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, 선관위의 제소에 따라 이사회는 회장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.

제 7 장 재정

제 35 조 (수입과 지출):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, 후원금 및 연합회의 기타 사업기금으로 충당한다. 장학금 조성 또는 회관 건립비 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복수의 은행계좌를 허용할 수 있다. 복수의 은행계좌 또는 CD 계좌의 개설은 회장, 이사장, 수석 부회장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 36 조 (회계 연도):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 월 1 일부터 다음 해 9 월 말로 한다.

제 8 장 상벌

제 37 조 (표창): 본회 또는 한인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인사는 회장의 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.

제 38 조 (벌칙):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발전에 유해한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그 지위와 권리를 제한받거나 제명될 수 있다.

제 9 장 동남부한인체육대회

제 39 조 (기능)

1) 목적: 동남부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만남과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, 차세대 및 미래세대와 함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, 각 지역 한인회와 유기적인 협력과 단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) 주관 : 본회가 주관하며 회장은 대회장이 된다.

3) 동남부체육대회는 애틀랜타에서 개최한다.

4) 후원: 총영사관 및 관련 단체, 기업, 그리고 개인.

5) 재정: 본회는 동남부체육대회 경비를 정기총회 전 결산하여 감사에게 제출한 후,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를 한다.

6) 체전종목 및 채점: 체전종목은 12 개 이상 종목으로 하고 시범경기는 2 개 종목까지 추가 할 수 있다.

제 10 장 분과 및 특별위원회

제 40 조 (분과위원회): 회장의 직속 기관으로, 전문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 본 위원회는 장학. 통일. 정치참여. 교육. 종교인권. 상공. 사회복지. 체육. 차세대 지도자. 한미 경제. 청소년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
제 41 조 (특별위원회):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11장 회칙 개정과 제정

제 42조 (개정): 본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 심의통과 및 총회 참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 단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, 회장이 할 수 있다.

제 12장 기타

제 43조: 본회의 개정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.

제 44조: 회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
● 별첨: 회비 관련 시행세칙 (2025.9.13 이사회 심의통과 및 제정)

● 회칙 개정 연혁

1 차 개정 (1994.9.24)

2 차 개정 (1997.10.25)

3 차 개정 (2001.9.8)

4 차 개정 (2006.9.16)

5 차 개정 (2008.4.20)

6 차 개정 (2011.9.24)

7 차 개정 (2024.9.14): 회칙위원 신철수, 박상근, 이기봉, 김강식, 최병일

8 차 개정 (2025.9.13): 회칙개정위원 천선기 (개정위원장) 김기환, 박효은, 조창원,
장영진, 임용섭, 최시영, 지상학, 백현미, 이영준,
신지나 (개정위원회 간사), 안찬모 (개정위원회 법률고문)
이상 총 12 인

회비 관련 시행세칙

(2025.9.13)

납부 대상	납부 금액	납부 기한	참고 사항
정회원	이사회 승인 후 추후 결정	정기총회 이전	매년 1 회 납부
부회장	\$1,000.00	임명/위촉장 수여 후 15 일 이내	임기 중 1 회 납부
수석부회장	\$2,000.00	임명/위촉장 수여 후 15 일 이내	임기 중 1 회 납부
이사장	\$5,000.00	임명/위촉장 수여 후 15 일 이내	임기 중 1 회 납부

